

청대 훈춘의 인삼과 범월

Ginseng Poaching and Border Trespassing in *Hunchun* during the Qing Period

김선민*

Kim Seonmin*

초 록

주제어

- 훈춘
- 두만강
- 만주어
- 청-조선 관계
- 국경
- 불법 채삼

1749년 훈춘의 두만강 인근에서 청나라의 채삼인 6명이 조선 병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청나라 채삼인과의 물물교환 과정에서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이 분개하여 청나라 채삼인을 습격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인 범인 7명은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후에 처형되었다. 조선과 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 양국 사이에 오간 문서 등이 조선의 『동문휘고』(同文彙考),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청대 만주어 자료인 『훈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방관은 피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선 조정은 국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청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사건에 관한 양국의 기록은 당시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양국 주민들의 교류, 월경, 물물교환, 채삼 규정, 국제 범죄인 인도와 심문, 국경의 관리 등 당시의 사회상과 양국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과 조선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tudies, Korea University
E-mail: seonminkim@korea.ac.kr

ABSTRACT

Keywords

- Hunchun
- Tumen River
- Manchu document
- Qing–Chosŏn relations
- Border trespassing
- Ginseng poaching

In 1749, during an incident near the Tumen River in Hunchun, six people, all Qing ginseng pickers, were killed by seven Korean soldiers from the Chosŏn garrison. The Chosŏn soldiers encountered the ginseng pickers on the border and agreed to exchange goods, but when they failed to receive the proper price for rice, the soldiers became angry and decided to attack the Qing ginseng pickers. The seven Korean criminals were executed a year and a half after the incident. The whole process regarding the arrest and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s, as well as the official exchanges between the Qing and Chosŏn governments, were recorded in detail in the Chosŏn document written in Chinese and the Qing documents written in Manchu. In dealing with this murder case, the Qing local officials focused on identifying the murdered victims, clarifying the victims' responsibilities, and disposing of their remaining belongings. On the other hand, the Chosŏn government focused on providing reports quickly to the Qing officials about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inals. In doing so, it tried to reduce the risk of any possible problems that the murder case on the border could cause in its relations with the Qing government. The relevant records on this murder case show various aspects of the Qing and Chosŏn relations, including the contacts between the people along the Tumen River, border trespassing, material exchanges, rules about ginseng picking, and border patrols. This case also reveals that the Qing and Chosŏn people from various classes had different relationship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interests.

I. 머리말

오늘날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훈춘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경원과 마주 보고 있는 국경도시이다. 동남으로 러시아, 서남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훈춘은 서쪽 바깥에는 두만강이 돌아 흐르고 안에는 홍계하(紅溪河)가 관통한다. 훈춘 주변을 둘러싼 여러 산과 하천 덕분에 이 지역 일대에서는 목재와 어류 등 다양한 자연 자원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훈춘이 위치한 두만강 동쪽 일대는 과거 조선과 청에

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는 산춘[實眼春]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이곳은 '경원부(慶源府)에서 북으로 이틀 거리며, 동으로 계관성(系關城)까지 하루 거리이고 남으로 두만강까지 이틀 거리에 있었다.'¹⁾ 조선시대 기록에는 훈춘(薰春), 회춘(會春), 야춘(也春), 훈춘(訓春), 후춘(厚春), 혼춘(琿春)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훈춘(薰春), 회춘은 세

¹⁾ 『용비어천가』, 『원본한국고전총서』 제2권, 권7 (대제각, 1973) p.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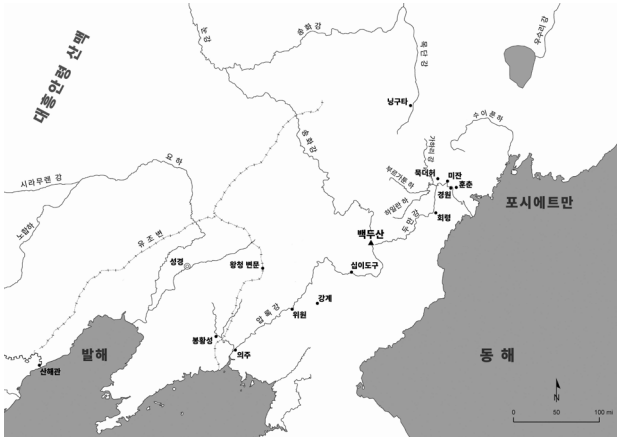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만주의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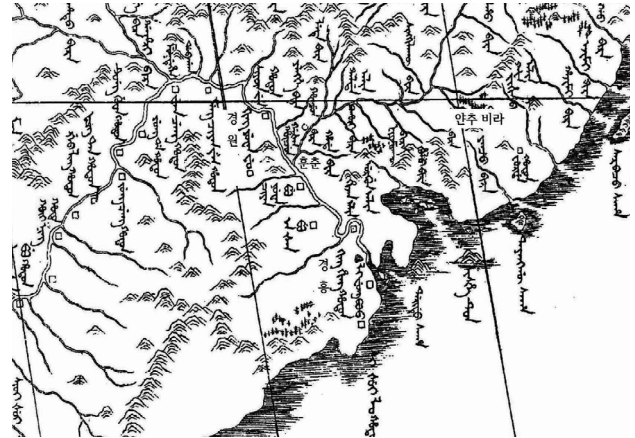


그림 2. 강희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1718) 第3排1號의 일부

종대 이후 사라지고 야춘은 인조 대까지 보이며, 세종-성종 연간에는 훈춘(訓春)이 널리 사용되다가 후금-청과의 접촉이 정례화되는 인조-숙종 연간에는 후춘으로 통칭되었다. 훈춘은 고종년간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인조실록』에는 야춘이 경흥부의 북쪽으로 겨우 100여 리 떨어져 있으며 토지가 기름져 생활이 매우 넉넉하다는 기록이 보인다.²⁾ 18세기 말 두만강 일대를 방문한 조선인은 경원에서 강의 북쪽으로 10여 리에 훈춘(渾春) 부락이 있으며 후춘(後春)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³⁾ 한편 현대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훈춘은 야춘과는 다른 곳으로, 청 초기에 야춘의 둔전민들을 훈춘강 일대로 이주시켜서 새로 만든 곳이었다.⁴⁾ 이러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조선은 두만강 동쪽 일대를 야춘·후춘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다가 17세기 중반 청과의 교섭이 빈번해지고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축적되면서 지명을 세분화하여 “야춘은 남쪽의 경흥 건너편, 후춘은 북쪽의 경원 건너편”에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훈춘은 청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물론 잘 나타나 있다. 1718년(강희 57) 만주어로 제작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는 경원부(ging yuwan fu)의 두만강 건너편과 훈춘강(hūncun bira) 사이에 훈춘 마을(hūncun gašan)이 표기되어 있다. 1761년(건륭 26) 한자로 제작된 건륭십삼배도(乾隆十三排圖)에는 훈춘 마을(渾春噶珊)은 훈춘강의 서쪽에 있고 훈춘역(渾春站)은 훈춘강의 동쪽에 표시되어 있어 만문본 강희 황여전람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청실록(淸實錄)에서 훈춘은 흔히 닝구타(寧古塔)·버두너(伯都訥)·알추카(阿勒楚喀)·삼성(三姓) 등 청대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함께 거론되었다. 즉 훈춘은 청대 동북지역 동남단의 대표 도시이자 그 일대를 포괄하는 행정영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이곳은 강희 연간에는 渾春으로 불렸고 건륭 연간에는 渾春과 渾春이 병칭되다가 가경 연간에 이르러 瑋春으로 불리게 되었다.⁵⁾

청대 훈춘은 만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팔기군이 주둔하여 통치했다. 만주에서 흥기한 청은 명을 무너뜨리고 북경으로 이주한 후 만주의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에 팔기군을 파견하여 주둔시켰다. 팔기 주둔군의 최고위직은 장군으로, 원래 주둔지의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는 뜻에서 總管(amban janggin)이라고 불렸다. 청 초기에는 오늘날의 요녕성에 해당하는 성경에만 장군이

²⁾ 『조선인조실록』 권40 (인조 18/2/병진) p.10a; 『조선인조실록』 권 40 (인조 18/2/계해) p. 11a; 『조선인조실록』 권47 (인조 24/8/임인) p.57a.

³⁾ 洪良浩, 『北塞記略』, 『江外記聞』,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4) p. 176.

⁴⁾ 寺內威太郎, 『慶源開市と瑋春』, 『東方學』 70 (1985) p. 1-3, p. 9-10.

⁵⁾ 김선민, 「훈춘, 청과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2015) p. 188.

설치되었으나, 러시아의 진출을 방어하고 청 황실의 고토(故土)를 보호할 목적으로 점차 만주의 다른 지역에도 장군이 설치되었다. 훈춘이 속해있는 길림지역에는 1653년(순치 10)에 팔기군이 처음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청이 만주의 동쪽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한 공식 행정 군사기구였다. 처음에는 닝구타 암반장군으로 불리다가 1662년(강희 1)에 닝구타장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676년(강희 15)에 장군의 처소를 기린 울라(girin ula)⁶⁾로 옮기면서 길림장군으로 불리게 되었다.⁷⁾

길림장군은 관할 지역에 주둔한 팔기군의 모든 업무를 맡고, 이들을 통솔하여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민인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했다. 길림장군은 중국 내지의 직성(直省)에 임명된 총독이나 순무와 비교하여 업무는 비슷했지만 지위나 권한은 더 높았다.⁸⁾ 장군 휘하에는 팔기군의 조직 체계에 따라 부도통(meiren i janggin), 협령(gūsai da), 좌령(nirui janggin)이 있었다. 주둔지역에서 협령과 좌령을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은 모두 해당 지역의 장군에게 있었다. 이 때문에 청대 팔기군 주둔지에서 부도통·협령·좌령 등은 장군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지방관과 같았다.

훈춘에 팔기군이 주둔하고 최고 책임자로 협령이 설치된 것은 1714년(강희 53)이었다. 훈춘 협령의 상급기관인 닝구타 부도통 아문은 당시 훈춘 일대에 거주하는 쿠야라(Küyara, 庫雅喇)인들을 군사 조직에 따라 편제했다. 청대 팔기군은 니루(niru, 좌령)를 단위로 조직되었는데, 이때 150명의 쿠야라인들은 3개의 니루로 편제하고 닝구타아문에서 파견된 40명이 여기에 추가되어 모

두 190명의 팔기병사가 훈춘에 주둔하게 되었다. 훈춘에 주둔한 팔기병사의 숫자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건륭 연간에는 모두 450명으로 늘어났다.⁹⁾

훈춘 협령은 주둔한 팔기군의 군정 기구이자 동시에 관할 지역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행정기구이기도 했다. 훈춘 협령은 관할 팔기병정을 위한 토지 경작, 의창 관리, 봉급 지급 등을 관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청이 훈춘에 협령을 설치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인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북경으로 이주한 후 청은 흥경 동쪽, 伊通河 남쪽, 두만강 북쪽의 1,000여 리를 봉금지역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인삼 채취·진주 채취·벌목·수렵을 금지했다. 훈춘은 바로 봉금지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민인의 이주나 토지의 개간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다.¹⁰⁾ 팔기군 주둔지 외에도 훈춘 일대에는 카룬, 즉 초소가 널리 설치되었다. 초소는 모두 요충지에 설치되었으며 초소마다 관원과 병사들이 번갈아 파견되어 주둔했다. 초소에 배치된 팔기 관병의 임무는 변경을 순찰하고 봉금지와 인삼 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훈춘에 주둔한 팔기군은 길림장군과 닝구타부도통의 명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산과 하천, 그리고 해안가를 정기적으로 순찰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채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청나라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강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조선에서도 사람들이 몰래 청의 땅으로 들어와 인삼을 캐거나 나무를 베어갔다. 관할지역에서 일반 민인이나 조선인이 사고를 일으키면 훈춘협령은 만주어로 보고문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인 닝구타부도통과 길림장군에게 보고했다. 1749년(건륭14) 조선 병사들이 강을 건너와 청나라 채삼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훈춘협령은 닝

⁶⁾ 청대 사료에서는 길림장군 관할 지역과 길림장군 아문 소재지를 모두 吉林(girin ula)이라고 불렀다. 이 글은 길림장군 관할 지역을 가리킬 때는 한자어 발음에 따라 '길림'으로, 길림장군 아문 소재지를 뜻할 때는 만주어 발음에 따라 '기린 울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⁷⁾ 1683년(강희 22)에 이르러 흑룡강장군이 새로 설치되면서 비로소 성경장군, 길림장군, 흑룡강장군이 만주를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다. 黃松筠, 欒凡, 『吉林通史』 제2권 (吉林人民出版社, 2008) p.206-219.

⁸⁾ 黃松筠, 欒凡, 『吉林通史』 제2권 (吉林人民出版社, 2008) p.213, 224.

⁹⁾ 黃松筠, 欒凡, 『吉林通史』, 제2권 (吉林人民出版社, 2008) p.222; 顧松潔, 『清代琿春八旗駐防研究: 以駐防協領爲中心的考察』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p.28-32.

¹⁰⁾ 顧松潔, 『清代琿春八旗駐防研究』 p.1-3.

구타 부도통에게 이를 보고했다. 한편 조선 병사가 저지른 이 사건은 “온성(穩城) 김인술(金仁述)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온성 부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곧 한양의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조선은 사건에 연루된 조선인을 체포하고 곧바로 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선 국왕이 청 황제에게 보낸 문서는 사건이 발생한 두만강 너머 훈춘협령이 아니라 압록강 너머 봉황성 성수위와 성경 예부를 거쳐 북경 예부로 전달되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훈춘협령이 작성한 만문 보고서 20여 건은 현재 영인되어 『훈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그림 3]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과 청이 주고받은 한문 문서 20여 건은 『동문휘고』(同文彙考)에 수록되어 있다.¹¹⁾

본 논문은 청의 만문 보고서와 조선의 한문 문서를 분석하여 청의 채삼인이 두만강 인근에서 피살되고 1년 반이 지나 조선의 범인들이 국경에서 효시 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나라 채삼인들이 인삼을 캐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 두만강 인근에서 조선인들과 마주칠 때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일군의 채삼인이 관할 지역에서 피살되었음을 확인한 훈춘 협령과 닝두타 부도통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청 관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피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었다. 반면 조선은 변경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범인의 체포와 심문 내용을 청 황제에게 신속히 보고했다. 청과 조선의 관리가 봉황성에서 회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경과 한양이 국경지대의 살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양국의 관계가 구체적



그림 3. 『훈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

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과 조선의 관계가 황제와 국왕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 두만강의 사람들

1749년 12월 25일(건륭 14/11/16) 새벽 날이 밝을 무렵, 훈춘에서 서북쪽으로 50리 떨어진 미잔(mijan) 카룬 초소에 한 사람이 찾아들었다. 그는 한겨울 추위에 모자와 신발도 없이 홀적삼과 바지만 걸친 채 손발이 얼어붙어 초소의 병사가 묻는 말에 대답도 못 하고 쓰러졌다. 초소를 지키던 좌령 더르수(Dersu, 德爾蘇)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 신원 미상의 인물을 훈춘에 있는 본청으로 보내지 않고 일단 자신의 초소에서 보살피기로 했다. 방문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더르수는 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초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내렸던 눈이 이미 녹아버려 사람의 발길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방문객은 9일이 지나서 비로소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쟁궁리양(Dzeng gung liyang, 曾鞏良)이고, 6명의 동료와 함께 4마리 말을 끌고 인삼을 채취한 뒤 산에서 내려와 돌아가던 길이라고 했다. 두만강 인근 묵더허(mukdehe)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선 이들이 나타나 죽이려고 해서 미잔 초소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마침 닝구타에서 돌아

¹¹⁾ 청과 조선의 사료를 활용하여 1749년 조선인의 청나라 채삼인 살인 사건을 분석한 연구는 Seonmin Kim, *Hunchun, the Qing-Chosŏn Border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1(1) (2016); 張心雨, 「邊禁之下: 朝鮮金仁述越境殺人案探究」, 『清史研究』 5 (2020). 이 사건과 관련된 『琿春副都統衙門檔』의 만문 문서 목록과 『同文彙考』의 한문 문서 목록은 [표 1]과 [표 2]에 첨부했다.

오던 사람들이 안장 없는 말 3마리가 길가에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잔 초소로 데려왔다. 모두 정궁리양 일행이 데리고 있던 말이었다.¹²⁾

정궁리양이 초소에 온 지 10일이 지난 1750년 1월 4일(건륭 14/11/26) 더르수는 자신의 상관인 훈춘협령서리 박시나(Baksina)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더르수는 정궁리양이 동상에 걸려 말을 타지 못해서 현장 조사에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박시나는 효기교(funde bošokū, 驍騎校) 다싱가(Dasingga)를 보내 모자와 외투를 사서 미잔 초소로 가게 했다. 더르수와 다싱가는 정궁리양에게 옷을 입히고 썰매에 태워 미잔 카룬에서 40리 떨어진 묵더허 강가로 수색에 나섰다. 그들은 강 북서쪽의 산기슭에서 불에 탄 오두막 두 채와 오두막 안팎에 시체 다섯 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체에는 모두 얼굴과 머리에 도끼에 찍힌 상처가 있었다. 네 구는 얼굴과 몸의 살과 가죽이 모두 손상되어 뼈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한 구는 몸에만 살이 조금 남아 있었다. 정궁리양이 말한 나머지 한 사람과 한 마리 말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정궁리양 일행의 시체가 발견된 오두막은 두만강 언덕에서 3리 떨어진 곳이었다. 서남쪽으로 강 건너 3리쯤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바로 조선의 유원진(柔遠鎭)이었다.¹³⁾

나중에 밝혀졌듯이 길림장군 관할지역의 영길주(永吉州)에 사는 민인(民人) 정궁리양이 인삼을 채취하게 된 것은 리오마쯔(Lio madzi, 劉麻子)라는 인물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리오마쯔의 본명은 시오우쯔(Siyoo udzi)였으나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어서 리오마쯔로 불렸다. 그는 원래 水夫(šuruci)였으나 1738년(건륭3)에 도망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1749년(건륭14)에 이르러 닝구타에서 삼표(蔘票), 즉 인삼채취권을 얻어 인삼을 캐는

채삼인이 되어 나타났다.¹⁴⁾ 이해 여름에 리오마쯔는 닝구타에서 만난 정궁리양에게 함께 인삼을 캐러 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리오마쯔와 정궁리양은 다른 일행들을 더 모집하고 말 네 마리와 곡식, 그리고 조총 1자루를 구해서 二道溝(el dao geo) 지방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이들은 인삼(orrhoda, 蘆頭) 45량과 인삼 뿌리(se solo, 蔘髮) 12량을 채취했다.¹⁵⁾

리오마쯔가 갖고 있던 삼표의 보증인은 팔기 관원인 효기교 연타이(Yentai)였다. 나중에 받은 조사에서 연타이는 자신이 보증을 서준 삼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리오머이즈(Lio mei jy), 평후와이린(Peng hūwai lin), 한다(Han da) 등 8명이었으나 정궁리양이 정식 채삼인인지 혹은 나중에 추가로 넣은 사람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¹⁶⁾ 한편 초소로 도망쳐 온 후 정궁리양은 두만강 인근에 이르렀을 때 본인 외에도 리오마쯔, 평산(Peng san, 彭三), 저오 히야쯔(Jeo hiyadzi, 周瞎子), 이다(I da, 伊大達子), 양산(Yang san, 楊三), 砲手 고산(G'o san, 郭三) 등 7명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¹⁷⁾ 나중에 닝구타 장군의 조사 결과, 당시 삼표를 받은 것은 평후와이린이었다. 평후와이린의 삼표에 이름을 올린 채삼인은 리오머이(리오마쯔), 멩더, 리오머이즈 등 3인이었다. 그 당시 삼표 1장으로 총 4명의 채삼인이 입산할 수 있었는데, 리오마쯔 일행이 모두 7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평 후와이린의 삼표로 입산한 채삼인은 규정된 4명 외에 3명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궁리양은 삼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산에 들어간 불법 채삼인, 즉 흑인(黑人)(sahaliyan niyalma)이었다. 또한, 닝구타의 삼표를 수령한 사람들은 수이편을 통해 들어와서 공삼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리오마쯔 일행은 흑인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러 지정된 경로를 피하여 훈춘으로 들어가 두만강 인근 묵더허까지 왔다가 조선인들

¹⁴⁾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4-85.

¹⁵⁾ 『琿春副都統衙門檔』2, p. 21.

¹⁶⁾ 『琿春副都統衙門檔』2, p. 70, 72.

¹⁷⁾ 정궁리양 일행의 한자 이름은 조선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同文彙考』2, p. 1084a.

¹²⁾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琿春副都統衙門檔』2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p. 16-17.

¹³⁾ 『琿春副都統衙門檔』2, p. 18-20.

과 마주친 것이었다.¹⁸⁾ 리오마쯔 일행은 채삼인을 규정된 숫자 이상으로 데려갔을 뿐 아니라 지정된 경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삼표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인삼을 캐고 산에서 내려온 리오마쯔 일행은 말을 데리고 훈춘으로 들어왔다. 1749년 12월 12일(건륭 14/11/3) 일행이 먹을 곡식과 말을 먹일 풀이 필요해지자 리오마쯔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고리오(Go'lio)의 집을 찾았다. 고리오는 훈춘에 주둔한 팔기 병사의 노복(booi aha)으로 인근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리오마쯔는 일행과 함께 고리오의 집에서 5일간 머물렀다. 리오마쯔는 고리오에게 은을 맡겨두고 내년에 삼표를 가지고 다시 훈춘에 오면 곡식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떠났다.¹⁹⁾ 그다음 리오마쯔 일행은 산둥 출신의 민인으로 훈춘에서 농사짓고 있는 시판리(Si fan lii)의 집에서 묵었다. 이곳에서도 역시 5일간 머무른 후 리오마쯔는 나중에 숙박비 2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²⁰⁾ 시판리의 집에 머무는 동안 리오마쯔는 타고 온 말을 훈춘의 팔기 병사의 말과 교환하고, 이 말을 다시 다른 팔기 병사에게 은과 곡식을 받고 팔았다. 리오마쯔는 말의 값으로 더 받아야 할 2량은 내년에 받기로 하고 훈춘을 떠났다.²¹⁾ 이처럼 리오마쯔 일행이 훈춘에서 지역의 팔기 병사나 민인들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는 모습은 채삼인들이 훈춘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이들이 외지인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삼 채취와 관련된 활동이 훈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2월 21일(건륭 14/11/12)에 시판리의 집을 떠난 리오마쯔 일행은 이튿날 두만강 인근의 묵더허 강으로 갔다

가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마주쳤다. 온성부(穩城府) 유원진(柔遠鎭)의 사병(土兵) 김인술(金仁述), 김두석(金斗石), 장성군(張成群) 세 사람은 땀감을 찾으러 두만강을 건너 대동구(大洞口)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곡식이 떨어진 리오마쯔 일행은 가지고 있던 포(布)를 조선인들에게 보여주고 곡식과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인술은 리오마쯔가 닝구타에서 온 채삼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들의 이름이나 출신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김인술과 그의 동료들은 보리(耳麥) 8두와 황두(黃豆) 5두를 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넜고, 이것을 리오마쯔 일행이 갖고 있던 포 1필 5척과 녹피(鹿皮) 1장과 바꾸었다. 이때 리오마쯔 일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와 꾸러미 두 개를 보여주며 “꾸러미 안에 인삼이 있다”라고 하면서 곡식을 더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밤 김인술 등은 다시 쌀 9두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나 거래는 전날 밤처럼 순조롭지 않았다. 나중에 받은 조사에서 김인술은 “청의 채삼인들이 쌀을 받은 다음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때리고 쫓아냈다”라고 진술했다.²²⁾

리오마쯔 일행에게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한 사실에 분개한 조선인 병사들은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김인술, 김두석, 장성군은 장한이(張漢伊), 장후창(張厚昌), 장귀안(張貴安), 김형삼(金亨三) 등 네 명의 동료 병사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청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기로 모의했다. 12월 24일(건륭 14/11/15) 밤 김인술은 도끼, 장후창은 총, 김두석·장성군·장한이·장귀안·김형삼은 각각 몽둥이를 들고 강 건너 청나라 채삼인들의 움막을 찾아갔다. 리오마쯔 일행 일곱 명은 그때 움막 두 채에 나누어 불을 피우고 누워있었다. 장후창이 공포를 쏘자 리오마쯔 일행은 놀라서 뛰어나왔다. 이에 김인술이 도끼로 두 명을 죽였고, 김형삼이 몽둥이로 때

¹⁸⁾ 張心雨, 「邊禁之下: 朝鮮金仁述越境殺人案探究」, p. 121-122.

¹⁹⁾ 『琿春副都統衙門檔』 2, p. 133, p. 195-196. 처음에 고리오는 리오마쯔가 이듬해 곡식을 가져가려고 은을 미리 주었다는 것은 일부러 알리지 않고, 리오마쯔 일행이 먹은 곡식과 마초의 값으로 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²⁰⁾ 『琿春副都統衙門檔』 2, p. 134.

²¹⁾ 『琿春副都統衙門檔』 2, p. 170-171.

²²⁾ 김인술 등 일곱 명의 조선인 사병은 체포된 후 리오마쯔 일행을 살해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다. 이때 김인술은 “홍년에 9두의 쌀은 사람의 목숨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18세기 중반 훈춘이나 경원 일대에서 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청인들에게 쌀을 빼앗긴 조선인들의 분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同文彙考』 2, p. 1075a, 1080a.

려 한 명을 쓰러뜨리자 김인술이 와서 도끼로 죽였다. 김두석과 장후창도 한 명씩 죽였다. 장성군, 장한이, 장귀안은 한 명을 쫓아가 때려죽였다. 조선인들과 청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움막이 쓰러져 불이 났다. 조선인 병사들은 불에 타지 않은 인삼 부스러기[碎蔘], 쌀, 포, 은, 옷 등을 가지고 가서 서로 나누어 가졌다.²³⁾

당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함부로 건너는 것은 청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의 허가를 얻고 강을 건너 교역하는 것은 물론 합법이었다. 양국의 변경 무역은 1628년 정묘호란이 끝난 직후 압록강의 中江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말에 두만강의 회령(會寧)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훈춘 건너편의 경원에서는 회령보다 훨씬 늦은 1646년에 개시가 시작되었다. 회령개시는 매년 열렸고 경원개시는 2년에 한 번씩,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열렸다. 경원개시는 야춘[巖丘]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암구개시”(巖丘開市)라고도 불렸으며, 조선의 북방에서 열리는 개시라 하여 “북도개시”(北道開市) 혹은 “북관개시”(北關開市)라고도 불렸다. 회령과 경원의 개시 규정은 1660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어 참가인원과 마소의 숫자를 규정하고 체류 일자도 20일로 제한했다. 그러나 훈춘은 이런 제한규정에서 예외였다. 훈춘은 경원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었다. 1714년 훈춘협령이 설치된 후부터는 팔기 관병이 통역을 데리고 와서 개시에 참여했다. 조선은 경원에 온 훈춘의 팔기 관병과 통역 및 노복에게 식량과 사료를 지급했고, 훈춘의 팔기 관병은 답례로 사슴가죽[鹿皮]을 지불했다. 경원개시는 거래 대상이 훈춘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물품은 적었지만 다양한 물건이 비

교적 자유롭게 거래되었다.²⁴⁾

김인술 일행이 두만강을 건너 리오마즈 일행을 만나고 곡식과 포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두만강 일대의 청인들과 조선인들이 경원개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쌀을 가져가서 인삼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어긋나자 김인술 등이 즉시 보복을 결심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청인과 조선인의 빈번한 접촉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인술 일행이 저지른 폭력의 심각성은 청인과 조선인이 맺고 있던 교류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인술과 리오마즈가 시도한 물물교환은 변경의 청인과 조선인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의 한 사례였으며, 여섯 명을 살해하는 심각한 폭력사건은 양국 변민의 빈번한 접촉이 초래한 한 극단적인 사례였다.

김인술 일행이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있는 동안 정궁리양은 옷과 신발을 벗어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외침 소리에 놀라 깨어난 그는 움막을 기어나와 도망쳤다. 이튿날 새벽 미잔 카룬에 도착해서 정신을 잃은 정궁리양은 9일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다음날 정궁리양은 썰매에 실린 채 자신과 일행이 묵었던 묵더허의 움막으로 청의 관병을 안내했다. 리오마즈 등 다섯 사람의 사체를 발견한 미잔 카룬의 더르수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궁리양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독촉했다. 걸을 수도 없이 쇠약해진 정궁리양은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심문을 받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리오마즈를 만나 훈춘에까지 온 경위를 설명하고 일행 여섯 명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더르수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살인지를 추궁했다. 그러나 정궁리양은 이내 먹었던 우유를 토하고 더는

²³⁾ 『同文彙考』2, p. 1083b-1084b.

²⁴⁾ 寺内威太郎, 「慶源開市と琿春」, 『東方學』70 (1985); 寺内威太郎, 「近世における朝鮮北境と中國: 咸鏡道の國境交易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36 (1998); 郭慶濤, 「試論17世紀中葉至18世紀清朝與朝鮮的會源邊市貿易」, 『韓國學論文集』6 (1997); 高승희, 『조선 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국학자료원, 2003); 張杰, 「清前期吉林滿族與朝鮮邊境貿易論述」, 『中國邊疆史地研究』20(4) (2010).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깨어난 지 6일 만에 죽었다.²⁵⁾

III. 살인 사건의 조사

훈춘에서 파견된 다싱가는 쩡궁리양을 데리고 묵더허 강가로 가서 움막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쩡궁리양 일행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이 강 건너 조선의 유원진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눈 위에 남아 있는 사람의 발자국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조선의 초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1750년 1월 10일(건륭 14/12/3) 다싱가를 포함한 여덟 명의 청나라 사람들이 온성에 찾아와 조선인들에게 물었다. “우리 쪽 묵더허 강가에서 다섯 사람을 죽이고 이들의 인삼·모자·외투·조총·술·도끼 등을 가져간 일이 일어났다. 너희 마을에서 가까우니 우리 쪽에서 사람이 지나갔을 것이다. 몇 명이 있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혹시 너희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가?” 조선인들은 강 건너로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사람들은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했다.²⁶⁾

쩡궁리양이 미잔 초소로 도망쳐 온 지 열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건이 훈춘에 보고되었다. 훈춘협령서리 박시나의 미잔 카룬을 관할하는 니루장긴 더르수를 데려와 질책했다. 미잔 초소는 닝구타와 훈춘을 오가는 대로(大路)에 위치해 있었고 묵더허 강을 포함한 두만강 일대를 관할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르수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불법 채삼인들이 담당 지역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더르수는 쩡궁리양이 도망쳐 왔을 때 그의 발자국을 거슬러 추적하여 원래 묵었던 곳을 찾아냈어야 했지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만강 인근에서 사람이 살해되는데도 즉시 훈춘협령에 보고하지 않고 열흘씩이나 지체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

도였다.²⁷⁾

박시나의 후임으로 훈춘협령서리에 부임한 집키오(Jibkio, 濟布球)는 2월 20일(건륭 15/1/14) 닝구타 부도통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보고서를 자신이 아니라 전임 협령인 박시나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이처럼 훈춘의 팔기 관리들은 쩡궁리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지체하고 심지어 보고의 주체도 분명하게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성격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살인과 불법 채삼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결합되어 있었다. 훈춘협령은 우선 쩡궁리양 일행의 성명과 출신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을 죽인 범인도 찾아내야 했다. 집키오는 더르수를 보내 범인을 체포하게 하는 한편, 쩡궁리양이 남긴 말 세 마리는 일단 훈춘 아문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죽은 사람들의 사체와 남겨진 세 마리 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닝구타 부도통에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²⁸⁾

한편 집키오는 범인을 잡기 위해 조선의 관리들과 계속 접촉했다. 그가 닝구타 부도통에게 올린 보고서를 종합하면, 1월 10일(건륭 14/12/3) 훈춘의 다싱가가 조선의 온성을 찾아가고, 3월 14일(건륭 15/2/7) 경원 관리가 미잔의 더르수를 찾아오고, 3월 21일(건륭 15/2/14)에 훈춘의 집키오가 두만강으로 가서 경원 관리를 만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훈춘과 경원의 관리들이 접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국왕 영조가 청에 보낸 자문에 따르면, 1월 26-30일(건륭 14/12/19-23) 사이에 온성 부사 조태언과 경원 부사 안집은 “上國의 差官”과 계속 사건을 조사하고 한양으로 보고를 올렸다. 경원의 병사들은 훈춘의 병사들과 협력하여 두만강 인근의 마을을 탐문하고 추적한 끝에 유원진 토병 장한이, 장성균, 장후창, 김인술, 장귀안 등 다섯 명을 먼저 체포했다. 이후 달아난 김두석과 김형삼도 체포되었다.²⁹⁾

²⁵⁾ 『琿春副都統衙門檔』2, p.22-23.

²⁶⁾ 『琿春副都統衙門檔』2, p.20-21

²⁷⁾ 『琿春副都統衙門檔』2, p.24

²⁸⁾ 『琿春副都統衙門檔』2, p.26

²⁹⁾ 『同文彙考』2, p.1074a, 1075b

3월 14일(건륭 15/2/7) 경원의 관리 4명과 통역 2명이 두만강가로 찾아와 훈춘의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경원에서 개시가 열렸을 때 훈춘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분분히 말하기를 ‘유원 건너편에서 조선인들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했다. 우리 조선 관리가 이 말을 듣고 (중략) 조선 관리가 유원의 남자들을 모두 오게 하여 살펴보니 세 사람이 없었다. 이 세 사람을 온성(Ongśan)에서 붙잡아 데려와 ‘너희는 분명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것이다’라고 추궁했으나 실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우리 유원 건너편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구인가? 몇 명이 죽었는가? 그들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었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상부에 보고했는가? 상부에 보고할 때 조선인이 죽었다고 밝혔는가?³⁰⁾

조선 관리들은 함경도 관찰사가 자신들을 파견했으며 서울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만난 훈춘의 관리들은 아직 길림장군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7명이고 말 4마리와 인삼 45량, 인삼 뇌두와 뿌리 12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삼인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간신히 도망쳤고, 한 사람과 말 한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다섯 구의 시체와 말 세 마리를 찾았다고 말해주었다.³¹⁾

두만강가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키는 청과 조선의 관리들이 보인 모습은 양국 관계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준다. 묵더허 움막에서 시체를 발견한 훈춘의 다싱가가 즉시 강 건너 조선의 초소로 다가가 사건에 대해 문의한 것, 온성의 조태언과 경원의 안집이 청의 관병과 빈번하게 사건을 논의한 것, 경원의 관리가 미잔의 더르수를 찾아오고 훈춘의 박시나

가 다시 경원의 관리를 만나러 간 것은 모두 양측의 관리와 병사들이 서로 접촉하고 협조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두만강을 사이에 둔 양측이 이처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건의 정보를 세밀한 부분까지 서로 공유했다는 것은 이들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훈춘과 경원의 관리들은 경원개시를 통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강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양국의 경계는 나뉘어 있고 통역을 거쳐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두만강을 마주 보고 있는 청과 조선의 관리들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 훈춘의 집키오와 경원의 안집이 생각하는 조선과 청은 북경의 청 황제와 한양의 조선 국왕이 생각하듯이 그리 먼 외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이웃사촌이었다.

3월 19일(건륭 15/2/12)에 이르러 길림장군이 파견한 관리가 훈춘에 도착하자 집키오는 그동안의 사정을 알렸다.³²⁾ 이를 후 집키오는 기린 올라에서 온 관리와 함께 두만강가로 나가서 직접 조선의 관리들과 만났다.³³⁾ 경원의 관리들은 7명의 죄인을 모두 체포했고 이 사실을 이미 조선 국왕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주었다. 살인을 저지른 조선인들의 성명도 훈춘의 관리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선 관리들은 또한 범인들이 채삼인 일행에게서 빼앗은 옷 속에서 작은 은 꾸러미가 발견되었지만 그 밖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³⁴⁾ 훈춘협령 집

³²⁾ 『琿春副都統衙門檔』2, p. 63.

³³⁾ 경원에서 온 관리들의 관직과 이름은 집키오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정확한 한자 성명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ts’o šeo hafan dzai ing mi, bing fang hafan han sio ho” (『琿春副都統衙門檔』2, p. 43). 당시 온성 부사는 趙泰彦, 유원 첨사는 李時華, 경원 부사는 安傑, 함경도 관찰사는 鄭益河, 절도사는 具聖彌였다. 『同文彙考』2, p. 1074a-b.

³⁴⁾ 나중에 조선 국왕이 청에 보낸 보고에 따르면 조선인 범인 가운데 金貴安은 정궁리양 일행으로부터 옷을 한 벌 빼앗았는데, 그 속에서 銀 7片이 발견되었다. 무게(重)는 총 20량 32전이었다. 『同文彙考』2, p. 1075b.

³⁰⁾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0.

³¹⁾ 『琿春副都統衙門檔』2, p. 62-63, 80-81.

키오는 이 사실을 모두 정리하여 닝구타 부도통에게 보고했다.³⁵⁾

한편 미잔 초소의 병사들은 쟁궁리양 일행의 말 3마리가 돌아다니던 곳 근처에서 사람의 사체를 발견했다. 미잔 초소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엎드린 채 죽어있었다. 그의 머리 옆에는 흰 양털 모자가 있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받치고 왼손은 땅을 움켜쥐고 있었다. 두 어깨 위의 살가죽은 모두 손상되어 뼈만 남았고, 어깨 아래의 살가죽은 황색이 되어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시신은 대략 지난해 겨울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⁶⁾ 훈춘의 관리들은 이 시체가 쟁궁리양의 일행이라고 명시하여 밝히지 않았지만, 시체가 발견된 위치나 살이 타서 황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묵더허의 오두막에서 사라졌던 쟁궁리양 일행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로써 쟁궁리양과 함께 인삼을 캐던 일행 6명은 결국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훈춘협령 집키오는 피살된 채삼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훈춘 일대를 조사했지만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겨울에 발견한 시체는 일단 굴을 파고 묻어둔 상태였지만, 땅이 녹기 시작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더구나 좁고 가파른 산속에 묻어둔 시체는 밤에 들짐승이 파헤칠 수도 있었다. 집키오는 결국 시체를 미잔 초소로 가져와 다시 매장하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했다.³⁷⁾ 그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사체만이 아니었다. 길가에서 발견된 쟁궁리양 일행의 말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이미 죽었고, 남은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회색빛의 흰색 말로 거의 20살이었고 뒤에 인두 질한 관인이 찍혀 있었다. 또 한 마리는 검은색으로 15살이었으며 한쪽 귀가 잘려져 있었다. 집키오는 두 말이 너무 야위었으므로 일단 훈춘에서 관리하고 봄이 되어 말

이 살찌기를 기다렸다가 닝구타로 보내기로 했다.³⁸⁾

IV. 청의 사후 처리

쟁궁리양 일행의 사건을 보고받은 닝구타 부도통은 먼저 사람을 죽인 자들을 체포했는지, 또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관에서 발급한 삼표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³⁹⁾ 닝구타 부도통은 또한 훈춘협령의 사건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뒤늦게 보고한 이유를 조사하라고 새롭게 집키오를 훈춘협령서리로 파견한 것인데, 집키오는 훈춘에 도착해서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임자인 박시나의 이름으로 사건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원의 조선 관리들이 찾아와서 범인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정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닝구타 아문에 보고해야 마땅한데도 기린 올라에서 파견된 관리가 훈춘에 도착할 때까지 보고를 미루고 지체했다고 지적했다.⁴⁰⁾

쟁궁리양이 미잔 카룬에 찾아갔던 1749년 12월 25일(건륭 14/11/16)에 훈춘을 관할하고 있던 것은 집키오가 아니라 박시나였다. 당시 임시로 훈춘협령서리를 맡고 있던 박시나는 미잔 카룬을 지키는 더르수로부터 사건을 보고받고 쟁궁리양에게 옷을 입히고 썰매에 태워 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초동 수사를 지시했다. 그 후에 훈춘협령서리로 부임한 집키오는 자신이 훈춘에 오기 전에 쟁궁리양 사건이 발생했고 전임자 박시나가 이미 최초 보고문을 올렸다는 것을 알았다. 집키오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보고한 내용에

³⁸⁾ 『琿春副都統衙門檔』2, p. 56-57.

³⁹⁾ 『琿春副都統衙門檔』2, p. 54. 닝구타 부도통을 통해 쟁궁리양 사건을 보고받은 길림장군은 훈춘협령에게 다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여 봉한 서류에 넣어 신속히 보내라고 지시했다. 『琿春副都統衙門檔』2, p. 45-46.

⁴⁰⁾ 『琿春副都統衙門檔』2, p. 60-61.

³⁵⁾ 『琿春副都統衙門檔』2, p. 42-44, 63-64.

³⁶⁾ 『琿春副都統衙門檔』2, p. 50-51.

³⁷⁾ 『琿春副都統衙門檔』2, p. 57.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박시나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명했다.⁴¹⁾ 경원에서 온 조선의 관리들을 만나서 정보를 듣고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린 올라에서 파견된 관리가 이미 자세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서 조선인들에게 들었던 것을 모두 적어서 보고하면 너무 번잡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보고했다고 변명했다.⁴²⁾ 닝구타 부도통이 질책하듯이, 국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훈춘협령의 사건 처리는 몹시 미숙했다.

정궁리양 일행을 죽인 범인이 조선인이고 이들이 이미 체포되었음을 확인한 후 닝구타 부도통의 주요 관심은 이제 피살된 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과 물건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우선 죽은 사람들이 훈춘에 왜 갔는지, 일꾼으로 고용되어 간 것인지 혹은 인삼을 채취하러 갔는지를 밝히고, 또 그들의 친척을 찾아내어 시신을 확인하게 해야 했다.⁴³⁾ 집키오는 피살된 정궁리양 일행을 처음부터 의심스럽게 여겼다. 이들이 살해된 목더허 강가의 오두막은 정식 삼표를 지닌 채삼인들의 거처로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키오는 닝구타 부도통에게 정궁리양 일행을 “불법 채삼인”이라고 보고했다.⁴⁴⁾

정궁리양 일행의 신원을 찾을 실마리가 하나둘씩 나타난 것은 그들이 살해된 훈춘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닝구타였다. 정궁리양 일행이 가지고 있던 삼표는 팔기병사인 연타이가 보증을 서 준 것이었다. 닝구타 부도통은 피살된 채삼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데리고 있던 말(馬)의 나이와 모습을 적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것을 본 연타이는 자신이 보증한 삼표에 기록된 말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닝구타 부도통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직접 훈춘에 가서 정궁

리양 일행이 데리고 있던 말의 생김새를 살펴보았다. 연타이는 자신이 보증한 삼표의 채삼인들이 데려간 말이 맞다고 확인했다.⁴⁵⁾

한편 삼표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정궁리양을 흑인(黑人)으로 만들어 데려간 리오마쯔의 신원도 드러났다. 닝구타의 관장(官裝)에 소속된 장치히웅(Jang ci hiong)은 닝구타 부도통을 찾아와서 자신이 리오마쯔의 처남이라고 밝혔다. 그의 본명은 시요우쯔(Siyoo udzi)이지만 얼굴에 마마 자국(madzi)이 있어서 리오마쯔라고 불렸으며 흑룡강의 수부(水夫) 출신이라고 말했다. 장치히웅은 리오마쯔가 연타이를 보증인으로 삼아 닝구타의 삼표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해주었다. 이어 장치히웅은 자신이 훈춘에 가서 처남 리오마쯔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⁴⁶⁾

닝구타 부도통은 장치히웅을 훈춘으로 보내 리오마쯔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는 한편, 따로 검시관을 보내 피살자들의 시신들을 살펴보게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므로 피살자들의 출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⁴⁷⁾ 닝구타에서 파견된 검시관은 훈춘에 가서 관리들과 함께 시신을 검사했다. 정궁리양은 귀, 가슴, 두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두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얼어 있었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갔으나 다른 상처는 없었다. 그의 일행 5명의 시신에는 도끼와 칼에 베이고 몽둥이로 맞아 죽은 상처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⁴⁸⁾

한편 닝구타 부도통이 따로 훈춘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 관리들 역시 리오마쯔는 닝구타에서 삼표를 받은 채삼인이 맞다고 보고했다. 리오마쯔 일행이 피살당한 목더허 강가의 오두막은 닝구타로 가는 대로에서 7-8리 떨어져 있고 길가에서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불법 채삼자가 숨어 있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⁴¹⁾ 『琿春副都統衙門檔』2, p. 16-26.

⁴²⁾ 『琿春副都統衙門檔』2, p. 64.

⁴³⁾ 『琿春副都統衙門檔』2, p. 68-69.

⁴⁴⁾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4.

⁴⁵⁾ 『琿春副都統衙門檔』2, p. 70-72.

⁴⁶⁾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4-85.

⁴⁷⁾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6.

⁴⁸⁾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9-91.

한편 그들의 삼표에 보증을 선 팔기 병사 연타이 또한 채삼인 가운데 리오마쯔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삼표에 적은 이름은 “리오메이(Lio mei)였으며 나중에 그들이 모두 훈춘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리오마쯔 일행이 정식으로 삼표를 받은 채삼인이라는 조사와 진술이 나오자, Ninguta 부도통은 처음부터 쟁공리양을 불법 채삼자로 간주한 훈춘협령 집키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전임 훈춘협령 박시나가 처음 사건을 보고했을 때 쟁공리양이 “나는 리오마쯔가 소지한 삼표를 따라서 인삼을 캐다”라고 대답했다는 점, 집키오가 보고할 당시 쟁공리양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불법 채삼자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 연타이의 삼표에 기록된 또 다른 채삼인 “평후 와이린”은 쟁공리양이 죽기 전에 말한 그의 동료 “평산(Peng šan)”과 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오마쯔 일행은 삼표를 소지하고 채삼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⁴⁹⁾

훈춘에 와서 쟁공리양과 리오마쯔의 신원을 확인한 연타이와 장치히용의 진술, 그리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쟁공리양의 사망 전 진술을 근거로 집키오는 자신의 최초 판단을 번복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나서 마침내 피살자들이 삼표를 소지한 채삼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삼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의 채삼 활동이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Ninguta에서 삼표를 받은 채삼인들은 가을에 채취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면 훈춘으로 들어와 정해진 액수의 인삼을 납부하고 꾸러미에 관인을 찍어야 했다. 관인을 찍은 인삼 꾸러미는 초소의 병사들이 Ninguta로 운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정액 이외에 추가로 채취한 인삼은 채삼인들이 시가(時價)로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쟁공리양 일행은 훈춘을 피해서 지나갔으며, Ninguta로 가는 대로에서 벗어나 묵더허 강의 좁은 산골짜기에서 밤을 보내다가 피살되었다. 이들은 인삼 45량을 채취해서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지정된 초소와 이동 경로를 피해서 지나간 것이

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사실 불법채삼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⁵⁰⁾

리오마쯔가 Ninguta에서 삼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게는 인삼을 납부할 책임이 있었다. 길림장군은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연타이가 보증한 삼표에 黑人을 끼워 넣어 데리고 있으면서 또한 인삼을 캔 다음 지정된 경로로 돌아오지 않았다. Ninguta 부도통이 발행한 이 1장의 삼표에서 미납된 인삼 12량은 규정대로 은으로 환산하여 보증인 연타이에게 책임을 지워서 징수하라.”⁵¹⁾ 채삼인이 인삼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가 비록 피살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그 책임을 져야 했다. 길림장군, Ninguta 부도통, 훈춘협령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정된 액수의 인삼을 징수하여 황실에 납부하는 것이었다.

죽은 채삼인의 미납 인삼을 징수하는 일 외에도 그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고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도 남아 있었다. 처음에 훈춘협령은 리오마쯔 일행이 남긴 말 2마리를 삼표의 보증인인 연타이에게 돌려주었다.⁵²⁾ 그러나 리오마쯔의 처남 장치히용이 나타나 리오마쯔가 훈춘에서 묵으면서 맡겨둔 말, 안장, 곡식 등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⁵³⁾ 재산 처리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Ninguta 부도통은 처음에는 장치히용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타이에게 주었던 말까지 되찾아 장치히용에게 주고, 훈춘의 팔기 병사가 리오마쯔에게 빚진 말값 2량도 받아서 전해주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결정을 번복하고 장치히용에게 말을 되찾아 연타이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리오마쯔는 훈춘의 노복 고리오에게 미리 은을 주고 이듬해 다시 와서 곡식을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고리오는 이 사실을 숨기고 리오마쯔 일행이 먹은 곡식과 마초의 값이었다고 진술했다. Ninguta 부도통은 고리오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리오

⁴⁹⁾ 『琿春副都統衙門檔』2, p. 87.

⁵⁰⁾ 『琿春副都統衙門檔』2, p. 93-95.

⁵¹⁾ 『琿春副都統衙門檔』2, p. 168.

⁵²⁾ 『琿春副都統衙門檔』2, p. 124.

⁵³⁾ 『琿春副都統衙門檔』2, p. 178.

마뜨가 남기고 간 은 9전 2량을 빼앗아 장치히웅에게 돌려주었다. 고리오 은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鞭 80대까지 맞았다. 자신의 집에 묵었던 사람들이 피살되었는데도 이를 바로 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이었다.⁵⁴⁾

훈춘 협령의 핵심 업무는 팔기 병사와 인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실제로 두 가지 모두 일반 민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상업과 운송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청제국의 최극단 변방에 수백 명의 팔기 병사와 그들의 가족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해 토지를 경작할 민인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문제는 기인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훈춘에 온 민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삼의 경제망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다. 훈춘은 인삼이 자라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채삼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훈춘을 출입하는 채삼인들 가운데는 정식으로 발급받은 삼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인삼 채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국가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훈춘 일대로 들어왔다. 외지의 채삼인들은 숙소와 식량을 얻기 위해 훈춘에 들어와서 팔기 병사와 일반 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교류했다. 훈춘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이곳에 주둔하는 팔기 병사와 각지에 산재한 인삼 산지였다. 청은 민인으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고자 훈춘에 팔기 병사를 주둔시켰지만, 바로 그 팔기가 민인을 불러들여서 인삼 채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V. 조선의 대응

두만강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곧 한양의 조선 조정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을 검거한 다음 한양은 사건이 발생한 두만강의 훈춘이 아니라 조선 사신이 왕래하는 압록강의 봉황성을 통

해 청과 연락했다. 유원진의 병사 5명을 청나라 채삼인 살해 용의자로 체포한 후, 1750년 2월 11일(건륭 15/1/5) 함경도 관찰사와 절도사는 한양의 국왕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⁵⁵⁾ 조선인이 경계를 건너 청의 영토로 들어가 청나라 사람을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은 영조는 2월 15일(건륭 15/1/9) 재자관(齎咨官)을 북경으로 급파하여 청에 사건을 보고했다.⁵⁶⁾ 2월 21일(건륭 15/1/15) 국왕은 함경도로 관리를 파견하여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⁵⁷⁾ 3월 10일(건륭 15/2/30)에 영조는 다시 재자관을 북경에 파견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사건의 전말을 청 황제에게 보고하게 했다. 청나라 채삼인의 살해에 가담한 유원진의 병사 7명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범인 가운데 김귀안이 빼앗은 옷 속에서 은(銀) 7조각이 발견되었고 보고했다. 또한, 함경도 관찰사와 절도사가 범인과 그들이 약탈한 은과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며 황제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⁵⁸⁾

조선인이 청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조선조정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태의 전말을 성실하게 보고하고자 노력한다는 뜻은 청 황실에 충분히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의 예부는 우선 파견되어 온 조선의 관리에게 은 30량을 하사하여 수고에 치하했다. 또한, 통역 1인에게 은 8량, 시종 10명에게 각 4량씩 하사하고, 조선의 사행단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돌려보냈다.⁵⁹⁾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조선의 노력은 이후 죄인의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보상되었다. 건륭제는 조선인이 청나라 채삼인 6명을 살해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강희-옹정년간

⁵⁵⁾ 김인술 일행이 청인을 살해한 사건은 통문관지에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국역 通文館志』 제2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p. 267.

⁵⁶⁾ 『同文彙考』 2, p. 1074b.

⁵⁷⁾ 『조선영조실록』 71 (영조 26/1/15) p. 3a; 71 (영조 26/2/25) p. 9b.

⁵⁸⁾ 『同文彙考』 2, p. 1075b.

⁵⁹⁾ 『同文彙考』 2, p. 1079b. 조선에서 오는 재자(齎咨) 사행(使行)에게 청 예부는 관례적으로 하사금을 지급했다. 1661년(순치 18)의 규정에 따르면 사신에게는 은 30량, 통사(通事)는 8량, 종인(從人)에게는 각 4량이 지급되었다. 『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古籍出版社, 1995) p. 506: 3a-3b.

⁵⁴⁾ 『琿春副都統衙門檔』 2, p. 192-196.

의 전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범인 김인술 일행과 온성과 경원의 지방관을 압록강 인근의 봉황성으로 보내고, 청과 조선에서 각각 봉황성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양국의 관리가 공동으로 범인을 심문하라는 것이었다.⁶⁰⁾

조선인이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어 청의 영토로 들어가는 일은 북경과 한양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 조선인의 범월은 시기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1640년대 흥타이지 시기에는 조선인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서 인삼을 채취하다가 체포될 경우 청의 관리가 한양에 파견되어 직접 사건을 조사했고, 범인들은 강변에서 효수되고 해당 지방관 역시 혁직되었다. 이후 1712년(강희 51) 조선인이 몰래 강을 건너와 나무를 베고 인삼을 캐고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의 관리 두 사람이 봉황성에 와서 조선 관리와 함께 범인들을 조사했다.⁶¹⁾ 이후 옹정-건륭년간에 이르러 조선인이 몰래 경계를 넘었다가 체포되었을 경우 범인과 해당 지역의 조선인 지방관을 봉황성으로 보내고, 청과 조선이 각각 관리를 파견하여 공동 조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갔다. 조선인 범인에 대한 처벌은 조선 국왕이 심의하여 청에 보고하면 황제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⁶²⁾ 경계를 넘어 청의 영토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조선인을 청의 관리가 일방적으로 심문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관리와 공동으로 조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초 이래 청과 조선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조선인의 범월에 대한 처벌방식이 점차 정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닝구타 부도통이 죽은 리오마쯔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을 무렵, 조선은 경원에 있는 김인술 일행을 압록강 너머 봉황성으로 압송하는 일로 분주했다. 5월 9일(건륭 15/4/14) 영조는 봉황성으로 조사

관을 파견하고, 김인술 일행이 봉황성에 가서 청의 관리들 앞에서 심문을 받을 때 앞서 조선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미리 단속했다. “진술하는 말에 차이가 있으면 처자와 부모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봉황성의 공동 심문에 대비했다.⁶³⁾ 또한, 두만강의 죄인을 압록강 너머로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청에 미리 알려둠으로써 만약 이들의 여정이 지체되었을 경우 황제로부터 받게 될 비난을 사전에 방지했다. 5월 19일(건륭 15/4/24) 영조는 김인술·장성균·김두석·장후창·장한이·장귀안·김형삼을 봉황성으로 압송하고 사망한 유원첨사 대신 온성 부사가 이들을 데리고 갈 것임을 청에 통보했다.⁶⁴⁾ 조선인의 범월과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조선은 매우 신중했다.

봉황성에 도착한 청과 조선의 관리들은 조선의 죄인들을 공동 심문하고, 이후 심문 결과를 청과 조선에 각각 보고했다. 살인을 주도한 김인술은 유원진 사병으로 27세였다. 그는 리오마쯔 일행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움막에서 조총 1자루와 말 4마리를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 두려워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청나라 사람들이 꾸러미 두 개에 인삼이 있으니 쌀을 가져오면 바꿔주겠다고 말했지만 사건 당일 밤에 갔을 때 인삼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두석, 장후창, 장한이, 장귀안, 김형삼 다섯 사람이 진술한 사건의 정황도 모두 동일했다. 다만 김인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⁶⁵⁾

보고를 받은 건륭제는 죄인 김인술 일당을 1710년(강희 49) 경계를 넘어와 청나라 사람을 살해했던 조선인 이만지(李萬枝)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

⁶³⁾ 『조선영조실록』 71 (영조 26/4/14) p. 15b.

⁶⁴⁾ 『同文彙考』 2, p. 1078a.

⁶⁵⁾ 김두석은 28세, 장성균은 36세, 장후창은 46세, 장한이는 38세, 장귀안은 33세, 김형삼은 26세였다. 모두 유원진의 사병이었고 서로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다. 『同文彙考』 2, p. 1080a-1083b.

⁶⁰⁾ 『同文彙考』 2, p. 1076a.

⁶¹⁾ 『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古籍出版社, 1995) p. 511:4b.

⁶²⁾ 청대 조선인 월경 사건과 심의과정은 王燕杰, 『清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에 자세히 다.

시 말해 조선의 범인과 지방관은 조선으로 보내 조선 국왕이 처리하게 한 것이었다.⁶⁶⁾ 조선 국왕은 자국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는 대신 죄인의 형량을 심의하여 황제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건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조선의 노력이 마침내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1751년 1월 23일(건륭 15/12/26)에 이르러 영조는 김인술 일행에 대한 처벌을 황제에게 주청했다. “조선 병사 7명의 범죄는 수범과 중범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경계를 넘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참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으며 집안의 재산은 관으로 몰수한다. 함경도 관찰사와 절도사는 관할 지역의 관리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관할 지역의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죄를 저지르게 했으므로 혁직한다. 온성 부사는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백성이 죄를 저지르게 했으니 혁직하고 2,000리에 유배한다.” 조선의 범인들이 피살된 채삼인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도 청에 다시 전달되었다.⁶⁷⁾

1751년 4월 12일(건륭 16/3/17) 건륭제는 범인 7인과 지방관을 조선 국왕이 주청한 대로 처벌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한, 조선 국왕은 즉시 범인을 체포하고 보고하였으므로 죄를 면한다고 통보했다.⁶⁸⁾ 리오마쯔의 일행이 두만강 너머에서 피살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751년 7월 2일(건륭 16/윤5/10), 살인을 저지른 김인술과 그의 동료 6명은 “국경”에서 효시 되었다.⁶⁹⁾ 그해 10월 4일(건륭 16/8/16) 영조는 건륭제에게 범인을 경계에서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소방(小邦)의 변민(邊民)”이 기아와 추위에 몰려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

른 것은 국왕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은혜로 죄를 면하게 되었음에 감사했다.⁷⁰⁾

VI. 맺음말

월경(越境)은 시기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국경지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국경지대의 사람들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결과적으로 경계를 무력화시키지만, 국가는 월경을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경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를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중양의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간의 경계는 하나의 분명한 선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국경지대는 양측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활발하게 접촉하는 넓은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국경지대에 관한 연구는 경계를 불변의, 논쟁이 중지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가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⁷¹⁾

훈춘이라는 국경지대를 국가권력의 의지가 중앙으로부터 전달되고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의 욕망을 분출하고 타협하는 곳으로 바라볼 경우, 국경지대는 청-조선 관계의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준다. 북경의 청 황제와 한양의 조선 국왕은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각각 중주국의 권위와 조공국의 충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중앙의 시각에서 경계는 양국의 상하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명확하게 구획된 고정된 선이고, 경계를 통제하고 범월을 처벌하는 일은 청 황제와 조선 국왕이 자신들의 힘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북경과 한양의 관점에서 보면 두만강

⁶⁶⁾ 『同文彙考』2, p.1083b-1084b.

⁶⁷⁾ 조선이 청에 보낸 물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검은 삼승포 12척, 양가죽 겹옷 1벌, 은 3량, 은 2편 6량 9전, 사슴 가죽 1벌,刀子 1개, 도끼 1개, 조총 1벌, 은 12량 2전. 『同文彙考』2, p.1086a-1087a.

⁶⁸⁾ 『同文彙考』2, p.1087a-1088a.

⁶⁹⁾ 『조선영조실록』, 73 (영조 27/윤5/10) p.23b. 이들이 효시된 “국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죄인의 심문이 봉황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처벌 장소 역시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⁷⁰⁾ 『同文彙考』2, p.1088b.

⁷¹⁾ Baud and van Schendel, Toward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1997)p.215-16.

과 압록강은 청과 조선의 조공 질서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유원진에 사는 조선인 병사나 닝구타에서 흘러들어온 청나라 채삼인에게 두만강은 종주국과 조공국의 경계를 가르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잠

깐 건너가서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거나, 감시하는 관리들의 눈을 피해 며칠간 밤을 보낼 수 있는 외딴곳이기도 했다. 강 건너의 사람들은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하루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거래했다. 황제의 권위와 조공 질

표 1. 『同文彙考』 제2권 (『同文彙考 原編』 권56, 犯越 8) 관련 사료 목록

한문 문서 제목	쪽수
「報穩城民犯殺咨」(건륭15년 정월 9일)	1073b-1075a
「犯人究核得情封留贓物咨」(건륭15년 2월 30일)	1075a-1075b
「禮部頒賞咨官咨」(건륭15년 3월 모일)	1075b-1076a
「禮部知會移咨盛京刑部派司員會同該國官審擬咨」(건륭15년 3월 14일)	1076a
「禮部知會犯殺據咨轉奏派官會審咨」(건륭15년 3월 14일)	1076a-1076b
「禮部知會據咨官呈請給咨發回咨」(건륭15년 4월 1일)	1076b-1077a
「禮部知會會審司官馳驛前往鳳凰城」(건륭15년 4월 4일)	1077a-1077b
「盛京禮部粘移刑部原奏知會犯人派員押赴鳳城候審咨」(건륭15년 4월 8일)	1077b
「犯人囚在北道押赴差遲緣由咨」(건륭15년 4월 15일)	1077b-1078a
「差參核使押應推諸人往鳳城會審咨; 同咨」(건륭15년 4월 24일)	1078a-1078b
「盛京禮部因禮部移咨催促會審咨」(건륭15년 4월 26일)	1078b-1079a
「回禮部移咨盛京催促會審咨」(건륭15년 5월 5일)	1079a
「禮部回究核犯人封留贓物咨」(건륭15년 5월 10일)	1079a-1079b
「禮部頒賞咨官咨」(건륭15년 5월 10일)	1079b
「回盛京禮部因禮部移咨催促會審咨」(건륭15년 5월 모일)	1079b
「盛京禮部粘移盛京刑部供招原文交該國擬罪咨; 粘單」(건륭15년 5월 26일)	1080a-1083b
「禮部粘移盛京禮部供招咨」(건륭15년 6월 10일)	1083b-1084b
「回禮部犯人交該國擬罪咨」(건륭15년 6월 19일)	1084b-1085a
「回盛京禮部犯人交該國擬罪咨」(건륭15년 6월 27일)	1085a-1085b
「陳犯人遵旨擬罪奏」(건륭15년 6월 27일)	1086a-1086b
「順付原贓咨」(건륭15년 12월 26일)	1086b-1087a
「禮部知會免議及犯人勘罪俱依議咨」(건륭16년 3월 21일)	1087a-1088a
「禮部照收原贓咨」(건륭16년 4월 모일)	1088b
「各犯遵旨勘結咨」(건륭16년 8월 16일)	1088b
「禮部回咨」(건륭16년 10월 30일)	1088b-89a
「謝免議表」(건륭16년 11월 6일)	1089a
「禮部知會謝免議表知道咨」(건륭17년 2월 12일)	1089b

표 2. 「琿春副都統衙門檔」 제2권 관련 사료 목록

만문 문서 제목	쪽수
「暫署琿春協領事佐領巴克西納爲拿獲私挖人蔘犯曾鞏良凍死其同伙被殺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정월 某日)	16-26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本處無名楊三之人拖欠人蔘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1월 19일)	34-35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赴圖們江邊與朝鮮官員交涉解送犯人事宜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14일)	42-44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呈送曾鞏良同儕被朝鮮人殺害原案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15일)	45-46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報在卡倫發現一具無名屍並無人認領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21일)	50-51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已呈報赴圖們江邊與朝鮮官員交涉解送罪犯事宜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22일)	53-56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已故曾鞏良等所遺馬匹疲瘦不堪俟返青後解送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26일)	56-57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將被朝鮮人殺害五人遺骸移至卡倫掩埋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26일)	57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報回朝鮮官員交涉解送罪犯事宜情形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2월 27일)	58-64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無憑查證卡倫無名屍身份暫時掩埋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3월 27일)	66-69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寧古塔正黃旗被甲等前來指認曾鞏良屍體及馬匹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3월 27일)	69-73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報件作查驗被朝鮮人殺害蔘夫屍傷及查辦此案詳情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3월 27일)	75-95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解送曾鞏良所遺馬匹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4월 1일)	124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報被朝鮮人殺害蔘夫劉麻子內弟認領其遺骸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4월 8일)	128-131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解送蔘夫劉麻子馬匹及馬鞍之人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4월 9일)	132-137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查拿曾鞏良同儕並嚴審買劉麻子馬匹者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5월 12일)	167-171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拿獲未到指定山中挖蔘者請如何處置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5월 26일)	173-74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解送鑲白旗閑散買劉麻子馬匹所欠銀兩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5월 27일)	177-178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審明琿春民人收劉麻子銀米及銀馬情形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6월 10일)	188-196
「署琿春協領事佐領濟布球爲將寧古塔押送蔘夫交其主嚴管並催交欠銀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 (건륭15년 6월 10일)	196-199

서의 무게를 느끼기에는 이들 사이에 놓인 두만강은 그 폭과 깊이가 좁고 낮았다.

두만강을 건널 수 없는 선으로 만들어 통제하고 이를 통해 황제와 국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일은 현지의 관리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였다. 그러나 훈춘의 팔기 관리와 경원의 관리들이 접촉하는 모습은 북경과 한양에서 표현되는 위계적인 조공 질서와는 상당히 달랐다. 조선 국왕이 청 황제에게 전하는 말은 엄격한 양식의 문서로 작성되어 높은 지위를 가진 조선 관리에 의해 전달되었고, 조선 사신이 가져온 국왕의 글은 봉황성과 성경을 거쳐 북경으로 전해져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반면 훈춘의 관리와 경원의 관리는 문서를 통해 만나지 않았다. 이들은 필요할 때 서로 두만강으로 찾아가 직접 면담했고, 통역을 대동하여 논의했다. 훈춘의 관리와 경원의 관리는 빈번히 접촉하며 정보를 주고받았고 한양에서 전해진 소식을 서로 공유했다. 훈춘과 경원은 북경과 한양 사이보다 훨씬 가까웠고 현지 관리들의 관계는 황제와 국왕보다 친밀했다.

두만강 일대에서 벌어진 접촉과 갈등, 그리고 이후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청과 조선에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의 건륭제, 훈춘의 박시나, 미잔의 더르수, 닝구타의 리오마쯔는 모두 청나라 사람들이었다. 한양의 영조, 경원의 안집, 온성의 조태언, 유원의 김인술은 조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건륭제와 영조의 관계는 박시나와 안집의 관계와 달랐고, 리오마쯔와 김인술의 관계와는 더욱 달랐다. 건륭제에게 영조는 황제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조공국의 국왕이었다면, 리오마쯔에게 김인술은 부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까운 현지의 사람이었다. 영조는 단 한 번도 건륭제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지만 언제나 북경 황제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았다. 반면 김인술은 리오마쯔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 대화하고 손을 잡고 물건을 주고받았다. 영조와 건륭제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간접적이고 관념적인 반면, 김인술과 리오마쯔의 관

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물질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건륭제-영조의 관계와 리오마쯔-김인술의 관계를 “청과 조선의 관계”로 일반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경지대에서 전개되는 청과 조선의 관계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이었다. 청과 조선으로 일반화되는 국가는 실제로 매우 이질적인 여러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청-조선 관계를 단선적이거나 일면적이지 않은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고 싸우고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리오마쯔와 김인술의 이야기는 북경의 황제와 한양의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관계의 정형화된 이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청과 조선이 맺어 온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상충

저자는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함

참고문헌

단행본

-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2003).
 洪良浩, 『北塞記略』, 『江外記聞』,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004).
 『국역 通文館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咸鏡道會源開市定例』, 『各司謄錄』 46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龍飛御天歌』, 『原本韓國古典叢書』 제2권 (大提閣, 1973).
 조선왕조실록
 顧松潔, 『清代琿春八旗駐防研究: 以駐防協領爲中心的考察』,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王燕杰, 『清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八旗通志初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9).
 『清實錄』 (中華書局, 1986).
 『琿春副都統衙門檔』,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欽定大清會典事例』(上海古籍出版社, 1995).

『同文彙考』

논문

김선민.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2015).

김선민. 「18세기 후반 훈춘 협령의 지역관리와 인삼행정」,
『史叢』 93 (2018).

郭慶濤. 「試論17世紀中葉至18世紀清朝與朝鮮的會源邊
市貿易」, 『韓國學論文集』 6 (1997).

寺內威太郎. 「慶源開市と琿春」, 『東方學』 70 (1985).

寺內威太郎. 「近世における朝鮮北境と中國: 咸鏡道の國
境交易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1998).

吳元豐. 「清代琿春協領副都統衙門及其滿漢文檔案」,
『東北民族研究』 제1집 (遼寧民族出版社, 2007).

張杰. 「清前期吉林滿族與朝鮮邊境貿易論述」, 『中國邊

疆史地研究』 20(4) (2010).

張心雨. 「邊禁之下: 朝鮮金仁述越境殺人案探究」, 『清史
研究』 5 (2020).

黃松筠, 樂凡. 『吉林通史』 제2권 (吉林人民出版社, 2008).

Baud, Michiel and Willem van Schendel. Toward a Compar-
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
(1997).

Kim Seonmin, Hunchun, the Qing-Choson Border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
tory*. 21(1) (2016).

Received: October 16, 2022

Revised: Dec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